

딩기 클래스에 적용되는 예인로프에 관한 규칙 안내

2019년부터 국내 요트대회 참가 클래스의 “예인로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대회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대회공지 및 세일링세칙에 예인로프에 관한 사항 명시

모든 보트는 해당 클래스규칙에 따라 예인로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클래스규칙에 예인로프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길이 7미터 이상, 직경 8밀리미터 이상의 물에 뜨는 예인로프를 보트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대회 특성상 예인로프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회공지 및 세일링세칙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명시할 수 있음

2. 현재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각 클래스의 규칙

- 옵티미스트: 4.3(b) 한가닥으로 된 **직경 5mm 이상, 길이 8m 이상**의 라인을 마스트 스위트 또는 스텝에 단단히 고정해 놓을 것
- 레이저: 별도 명시없음
- 470: C.5.2(b) **직경 8mm 이상, 길이 10m 이상**, 부력탱크내 비치는 금지
- 420: C.5.2(b) **직경 8mm 이상, 길이 8m 이상**, 마스트에 고정해 놓고, 보트가 전복된 상태에서도 구조배가 보트 선수에서 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것
- 49er: 별도 명시없음
- 윈드서핑(RS-One/RS-X/T293): C4.2(a)/C1.2(c)/C4.2 **직경 4mm 이상, 길이 5m 이상**의 라인을 선수가 휴대할 것

3. 규칙 적용

- 클래스규칙에 예인로프가 명시되어 있는 옵티미스트, 470, 420, RS-One, RS-X, Techno 293은 클래스규칙에 따라 준비할 것
- 49er는 대회공지 및 세일링세칙에 따라 “길이 7미터 이상, 직경 8밀리미터 이상의 물에 뜨는 예인로프”를 선체 내에 비치할 것
- 레이저 스탠다드, 레이디얼, 4.7의 경우에는 ILCA 및 KLCA의 권고에 따라 메인 시트를 예인로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인로프를 비치하는 것도 가능함.

2019년 3월 11일
대한요트협회 기술위원장 유재훈